

취허가신청서에 관한 설명

이민국 (INS)는 당신이 작성한 취업신청서의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색인

부별	쪽 번호
1. 일반	1
2. 자격의 구분	1
3. 신청 때마다 필요한 서류	5
4. 수수료	
5. 신청서류 제출처	6
6. 정보의 처리	7
7. 기타 정보	7

1 부 일반사항

신청서의 목적. 미국 내에 임시 체류하고있는 일부 외국인들은 양식 I-765, 취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허가서류(EAD)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미국 내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들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음. 당신이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알려면, 2 부의 자격의 대 상구분을 검토하기 바람.

정의

취업허가서류 (EAD): 해당 서류 소지자는 미국 에서 취업허가를 받았다 는 증거로 이민국이 발급한 양식 I-688, 양식 I-688A; 양식 I-688B 혹은 그 후에 발급된 모든 서류들.

EAD의 갱신: EAD는 유자격자에게 발급된 EAD의 유효기간 만료시 또는 만료후에 같은 근거로 발급함.

EAD의 재발급: 유자격자에게 이미 발급된 EAD가 분실, 도난, 찢어졌거나, 또는 이름의 스펠링이 잘못된 것과 같은 오류가 있을 경우 재발 급함.

임시 EAD: 유자격자가 적절한 EAD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90일 내에 또는 1995년 1월 4일 이후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신청서 를 제출한후 30일 내에, 이민국에서 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EAD를 발행함.

2 부 자격의 구분

이민국은 접수된 신청서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 공하였는지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에 취업허가 신청을 판정함. 자격유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양식 I-765 의 해당자격 구 분을 표시하고 16번 질문에 답해야 함. 신청 양 식에서 다음 구분 중 하나만 표시해야 함.

주의: 구분 (c)(13)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c) (13)를 근거로 한 EAD의 재발급이나 대체는 되지 않음. 당신이 발급 받은 EAD의 근거가 이 구분인 경우, 당신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구분 이 있는 지를 알기 위해 다음 구분을 살피기 바 람.

망명자, (망명이 승인된 자)-(a)(5). 망명승인서 와 함께 EAD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지하고 있는 EAD가 만료되기 90일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피난민-(a)(3). EAD를 신청할 때, 양식 I-590, 난민분류 등록 승인서의 사본이나, 양식 I-170, 난민/망명자 승인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난민 임시 입국 자 -(a)(4). 양식 I-94, 출발기 록, 과 함께 EAD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망명신청자 (망명신청계류중)로서 1995년 1월 4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c)(8). 만약 1995년 1월 4일 양식 I-589 망명 및 강제추방 보 류 신청서를 했다면, EAD 신청자격을 얻을 때까지 최소 150일 간 기다려야 함. 만약 EAD 신청 서를 조기 제출하면 부결되고 다시 새로운 신청 을 해야 함. EAD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서 류들을 구비해야 함.

- *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부된 이민국의 접수증,
- * 이민국에 양식 I-589를 접수시켰다는 다른 증거, 또는
- * 이민심사국의 판사에게 양식 I-589를 제출 했다는 증거, 또는
- * 본인의 망명신청이 행정 또는 사법절차 상 검토중이라는 증거

1995년 1월 4일 이전에 망명 및 추방 보류 신청을 제출한 망명 신청자 (망명신청 계류중인 자)로서 제외 또는 추방 절차 중에 있지 아니한 자-(e)(8). 이에 해당되는 자는 어느 때나 EAD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신청자가 제출한 망명 신청이 이민국에서 볼 때 성의있는 내용이어야만 발급이 가능함.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종전에 제출한 양식 I-589의 완전한 사본 과
- * 이민국 접수증 통지서; 또는
- * 이민국 접수 우편 통지서; 또는
- * EOIR과 함께 양식 I-589를 제출했다는 증거; 또는
- * 당신이 제출한 망명신청이 현재 행정 또는 사법적 심의 중이라는 증거; 또는
- * 당신이 망명신청을 했다는 기타 증거.

1995년 1월 4일 이전 최초망명요청을 제출한 망명신청자(망명신청 계류 자)로서 제외 또는 추방절차기간에 해당하는 자 - (c)(8), 만약 당신이 1995년 1월 4일 이전에 망명 및 추방보류신청(I-589)을 제출하였으나 제외 또는 추방절차 중에 있으면, 다음의 서류와 함께, EAD를 신청 하기 바람.

- * 종전에 제출한 날자 스탬프가 찍힌 양식 I-589; 또는
- * 양식 I-221, 근거제시 명령 및 공청회 통지서, 또는 I-122, 입국서류상태 이민관사 공청회 신청인 통지서의 사본; 또는
- * 이민관사실의 날자 스탬프가 찍힌 EOIR-26, 항소 통지서의 사본; 또는
- * 신청자에게 발급된 사법심의 또는 출두영장의 날자 스탬프가 찍힌 사본; 또는
- * EOIR과 함께 망명신청을 제출했다는 증거.

ABC 정착합의에 의한 망명신청-(c)(8). 미국 칩레교회 대 톤버, 760 F, Supp. 976 (N.D. Cal. 1991) ABC 정착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살바도리아 또는 과태말라 국민의 경우는 양식 I-765를 제출할 때 여기에 포함된 지침을 따라야 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이나 이민 관사에게 망명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함. 따라서 EAD 신청을 할 때는 망명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바람. 꼭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출하면 이민국에 도움이 될 것임.

EAD의 갱신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함:

- * EAD 신청서 상단 우측에 “ABC”라고 쓸 것. ABC 정착합의에 따라 신청할 경우, ABC 해당 자임을 밝혀야 함.
- * 신청서의 16 부분에 “(c)(8)”라고 써야 함.

EAD 신청의 판정은 60일 이내에 결정됨. 단 (1) 수수료를 지불하고, (2) 계류중인 망명신청이 완전한 상태라야 하며, (3) EAD 신청서 상단 우측에 “ABC”라고 적혀 있어야 함. 만약 초기 EAD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이민국에서 당신의 망명신청이 무성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EAD 신청은 부결 될 수 있음.

그러나, EAD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8 CFR 103.7(e)에 의해 지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수수료 면제와 관련, 4 부 지침 참조바람.

이민국 상대로 NACARA 구조 신청 유자격자인 NACARA 203조 신청자-(E)(10). 양식 I-881, 추방중단 또는 제거취소 신청에 관한 지침을 보고 당신이 NACARA 203조 이민국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바람.

유자격자는 하기 지침에 따라 양식 I-881 신청과 동시에 양식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 양식 I-881을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는 EAD 신청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 I-765의 질문 6에 대한 답은 “(c)(10)” 이어야 함.

* 만약 양식 I-881을 양식 I-881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에 이미 접수시킨 경우는 양식 I-765의 질문 16에 대한 답은 “(c)(10)” 이어야 함. EAD 신청은 본 지침서 4 부에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 I-881을 종전에 이민국에 제출한 NACARA 203 조 신청을 한 후 아직도 계류중인 자는 EAD를 갱신할 수 있음. 본 지침서 5 부에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EAD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출국실시연기(DED)/자진출국연기-(a)(11). 신분과 국적을 제시하고 EAD를 신청해야 함.

학업과 직접 관련된 직업분야에서 선택실습을 하려는 F-1 학생-(e)(3)(i). EAD를 신청하되 지난 30일 이내에 해당학교 관리가 발행한 비이민 (F-1) 학생신분 자격증 (양식 I20 A-B/I-20 ID)를 함께 제출해야 함.

유 자격 국제기관이 주관하는 캠퍼스 외곽 취업 제의를 받은 F-1 학생-(c)(3)(ii). EAD를 신청할 때 제공되는 취업기회가 해당 국제기관의 주관범위 내라는 국제기관의 확인서와 학업 및 언어 학생들을 위한 지난 30일 이내에 해당학교 관리가 발행한 비 이민 (F-1) 학생신분 자격 확인서 (I-20 A-B-20 ID)를 제출해야 함.

경제곤란으로 캠퍼스 외곽에서 취업을 원하는 F-1 학생-(c)(3)(iii). EAD를 신청 할 때 양식 I-20 A-B/I-20 ID, 학업 및 언어 학생들을 위한 비 이민 F-1 학생신분 자격확인서, 양식 I-538, 지정된 학교 관리의 확인서, 요청의 원인이 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사정을 설명하는 서약서와 같은 증거 또는 캠퍼스외곽의 노동 및 임금증명을 제출한 고용주의 직장에 취업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교환방문자의 J-2 배우자나 자녀들-(c)(5). J-1 교환방문자 (방문의 주 대상 외국인)의 교환방문자 (J-1) 신분자격 확인서 (양식 IAP-66)와 함께 EAD를 신청함. J-1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취업이 필요하다는 서면증거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학업을 완료한 후에 실습을 원하는 M-1 학생-(e)(6), EAD를 신청할 때 완성된 양식 I-538, 비 이민 학생 체류연장, 전학, 취업 수락 또는 계속을 위한 신청서, 지난 30일 이내에 지정된 학교당국자가 발급한 양식 I-20 M-N 비 이민 직업훈련학생(M-1) 신분 자격확인 서를 제출해야 함.

CCNAA E-1 비이민자 가족-(e)(2). 북미사무협조위원회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인 경우, 재대만 미국협회로부터 필요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EAD 신청을 해야 함.

나토요원의 가족-(e)(7). 신청자의 주 해당외국인의 신분, 신청자의 신분, 주 해당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는 NATO/SACLANT가 발행하는 서한과 함께 EAD를 신청해야 함.

N-8 또는 N-9 비이민 자-(a)(7). 3 부에 열거된 필요한 증거들과 함께 EAD를 신청해야 함.

가족결합계획-(a)(7). 이 계획에 해당 될 경우, 허가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EAD를 신청해야 함. 양식 I-817 가족결합계획하의 자진 출국신청서와 함께 EAD를 신청할 수 있음. 이민국은 가족결합 계획 신분이 승인된 날자로부터 90일 안에 EAD 신청을 관정할 수 있음. 가족결합 신분 신청이 단순히 1988년 5월 이후 합법화/SAW 계획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는, 새로 양식 I-817 가족결합 신청서와 함께 먼저 거부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EAD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만약 당신의 EAD 신청의 근거가 (e)(12)의 자격지속인 경우는 추방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 허가를 참조하기 바람.

LIFE 가족결합-(a)(14). 만약 LIFE 법 개정 1504조의 가족결합 조항에 의하여 처음으로 취업 허가나 그런 허가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음. 양식 I-817 가족결합해택 신청서를 구하여 작성하기 바람. LIFE 법의 가족결합 개정조항에 의하여 발급된 EAD를 갱신하려 할 경우는, 3 부에 열거된 필요한 증거들과 함께 EAD를 신청해야 함.

미국시민의 K-1 비 이민 약혼자 또는 K-2 가족-(a)(6). 입국 90일 내에 EAD를 신청해야 함. 이 EAD는 갱신이 불가능 함. 갱신을 제외한 EAD 신청은 (c)(9)의 신분조정 판정 계류를 근거로 해야 함.

미국시민의 K-3 비 이민 배우자 또는 K-4 가족-(a)(9), EAD를 신청할 때 양식 I-94, 여권, K 비자 등의 입국승인 증거와 함께: USINS P.O.BOX.7218,Chicago,IL 60680-7218 로 보내야 함.

V-1, 2 또는 3 비이민자-(a)(15). 유효한 V 비자로 심사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한 경우는 양식 I-94, 여권, K비자 등 입국증거와 함께 EAD를 신청해야 함. 미국체류 중 V 신분을 승인 받은 경우는 V 신분의 승인 증거와 함께 이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미국에 체류중이나 아직 V 신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신청서와 함께 V 신분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함. 이민국은 V 신분 신청을 관정한 다음 이 신청을 관정함. 모든 V관련 취업허가 신청은 USINS, P,O, BOX 7216, Chicago, IL 60680-7216으로 보내야 함.

양식 I-765 설명서 (01.9.20 개정)Y 3 쪽

마이크로네시아, 마셜 아일랜드, 또는 팔라우 시민-(a)(8).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CFA/FSM) 또는 마셜아일랜드(CFA/MIS)의 시민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면, 미국과 전 신탁통치영토와의 협정에 따라 EAD를 신청할 수 있음.

비 이민 자를 위해서 개인일 또는 가정 일을 하는 비 이민 자-(c)(17)(i). EAD 신청 때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고용주가 B,E,F,H,I,J,L,M,O,P,R, 또는 TN의 비 이민 자이며 당신이 지금의 고용주에게 입국하기 전 최소한도 1년 간 고용되었었거나, 고용주가 개인일 또는 가정 일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도 수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증거, 그리고,

* 이 고용주를 위해서 최소한 1년 간 개인일 또는 가정 일을 했다는 증거나, 개인 또는 가정 일을 위해서 최소 1년 간 일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신청자는 해외에 주거지가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미국시민을 위한 B-1 비 이민 가정부-(c)(17)(ii). EAD 신청 때 다음 증거를 제출해야 함.

*당신의 고용주가 미국시민이라는 증거, 그리고
*고용주가 해외에 영구적인 집을 갖고 있으며, 미국 외에 주둔하고 있거나, 시민의 현재 미국 내 직책이 4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 그리고

*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최소 6 개월 간 가정부로 그 시민에게 고용됐었다는 증거.

외국 여객 편에 의해 고용된 B-1 비 이민 자-(e)(17)(iii), EAD를 신청 할 때 자세하게 직책을 기술하고, E 비 이민 신분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지위를 함께 써내야 함. 단 신청인의 국적이 여객편의 국적과 같지 않거나 미국과 해당국가 간에 상업 및 항해 조약이 없는 경우는 제외.

임시보호 신분상태(TPS)-(a)(12). EAD를 신청 때, 양식 I-821 임시보호신분 신청서를 제출함.

* 최초 TPS 근거 신청서만 제출: 양식 I-821 지침에 따른 신분 및 국적 증거를 포함 함.

임시처우 혜택-(c)(19). 8 CFR 244.5 관련 또는 이를 근거로 하는 경우, 양식 I-821 지침에 의해 필요한 국적 및 신분확인의 증거를 포함해야 함

*TPS 신분의 연장: 최종 TPS 서류의 사본(전면과 후면): EAD 또는 양식 I-94 E는 승인통보서.

*취업허가 없이 TPS만 등록: 양식 I-765, 양식 I-821 그리고 이 양식은 등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편지. TPS 등록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양식 I-765는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음. (양식 I-821은 별도의 수수료 요구조건이 있음.)

주의: TPS 등록만을 위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내 취업을 원치 않을 경우는, 등록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해야 함. 등록에는 수수료가 없음.

승인된 출국보류-(a)(10). EAD 신청서와 함께 이민판사의 명령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현재의 EAD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는 신규 EAD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A-1 또는 A-2 외국관리의 가족-(c)(1). EAD 신청서와 함께 양식 I-566 개인의 A에서 G신분으로 또는 A,G로 변경조정을 요청하는 정부 부처간의 기록; 또는 국무성의 승인을 받은 나토 가족 취업 허가 서를 제출해야 함.

G-1, G-3, 또는 G-4 비 이민의 가족-(c)(4). EAD 신청서와 함께 양식 I-566 개인의 A에서 G신분 또는 A,G로 변경조정을 요청하는 정부 부처간의 기록; 또는 국제기관의 유자격 G-1, G-3, G-4 관리 또는 대표, 또는 피고용인으로 유효한 비 이민 신분인 경우는 국무성의 승인을 받은 나토 가족 취업허가 서를 제출해야 함.

조정신청자-(c)(9). EAD를 신청할 때 양식 I-485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라는 증거로 접수증의 사본 또는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함. 양식 I-485와 함께 양식 I-765를 제출 할 수도 있음.

추방중지 신청자-(c)(10). 양식 I=256A 추방중지 신청서가 계류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공익을 위한 입국허가-(c)(11). 긴급한 이유나 순전히 공익차원의 이유로 입국이 허락되었을 경우는 EAD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추방대상자이나 자진출국이 허용된자-(c)(12). EAD 신청 시 자진출국 명령 또는 통지서의 사본 과 경제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연기조치-(c)(14). EAD 신청서와 함께 연기조치를 받았다는 명령, 통지서 또는 서류와 경제사정으로 EAD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1972년 1월 1일 이후 계속 거주 이유를 근거로 한 조정신청-(c)(16). EAD 신청 때 양식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증 사본, 또는 양식 I-485가 계류중이라는 기타 증거를 제출 해야함.

추방 최종명령-(c)(18). EAD 신청 때 감독 명령서의 사본 그리고 다음에 제한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하는 취업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취업해야 하는 경제사정의 존재, 당신이 부양해야 할 미국내의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 그리고
- *미국 출발 시까지의 대략적인 기간

LIFE 합법화 신청자-(C)(24), EAD 신청을 양식 I-485 와 함께 신속 처리를 위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신청후 신청자가 2000년 10월 1일 이전 CSS, LULAC, 또는 Zambrano 단체 신청자였다는 증거와 양식 I-485가 계류중이라는 증거의 접수증 또는 다른 증거를, 양식 I-765와 함께 나중에 제출할 수 있음.

3 부. 신청때 마다 필요한 서류들

모든 신청은 2 부의 자격 구분에 언급된 증거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구분 (2부 참조)과 관련 경제적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요구될 경우, 자산목록, 수입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류들을 모으도록 권고함: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자세한 것은 4부 수수료 참조.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다음의 서류들도 반드시 보내야 함.

*양식 I-765 서명카드. 신청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해당지역 이민국에 요청할 것. 카드의 푸른 상자에 "Signature"라고 적인 곳에 서명함. 신청서를 발송할 때 이 카드를 접지 말아야 함.

* 양식 I-94 출발기록 (전면과 후면)-있는 경우.

*지난번의 EAD (전면과 후면)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 30일 내에 촬영한 백색 배경의 사진 2매. 사진은 이 종이에 부착, 인화된 광택지에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야 함. 사

진은 오른쪽 귀가 보이도록 오른쪽으로부터 얼굴의 3/4 이 보여야 함. 소속종교의 명령이 없는 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함. 사진의 크기는 1 1/2인치 X 1 1/2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머리 위에서 턱 바로 아래까지의 길이는 1 1/4인치가 되어야 함. 사진 뒤에 각각 연필로 가볍게 이름과 영주권번호 (아는 경우)를 써야 함.

4. 수수료

하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청자는 \$100를 지불해야 함. 수수료를 내야 할 경우 반환하지 않음. 수표나 환수표는 미국 달러로 되어야 함. 수령인은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앞으로 해야 함. 구암의 거주자는 "Treasurer, Guam"으로, 미국 Virgin Island 거주자는 "Commissioner of Finance of the Virgin Islands" 앞으로 수표를 써야 함. 수표가 구좌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30을 추가로 내야 함. 현금은 우편으로 보내지 말기 바람.

최초 EAD의 경우: 최초의 신청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면, 수수료가 면제 됨.

- *(a)(3) 피난민
- *(a)(4) 난민으로 입국 허가된 자
- *(a)(5) 망명자
- *(a)(7) N-8 또는 N-9 비이민자
- *(a)(8) Micronesia, Marshall 제도 또는 Palau 시민
- *(a)(10) 추방보류의 승인을 받은 자
- *(a)(11) 출발집행 연기자
- *(c)(1) 또는 (c)(4) 일부 외국정부, 국제기관, 요원의 가족. 또는 (c)(8) 망명신청자 (특수 ABC 절차에 의한 신청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EAD 갱신의 경우: 갱신신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료 지불이 필요 없음.

- *(a)(8) Micronesia, Marshall 제도 또는 Palau 시민
- *(a)(10) 추방보류의 승인을 받은 자
- *(a)(11) 출발집행 연기자 또는
- *(c)(1) 또는 (c)(4) 일부 외국 정부, 국제기관 요원의 가족.

EAD 대체신청의 경우: 대체신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료가 필요 없음.

- *(c)(1) 또(c)(4) 일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요원의 가족

8 CFR 103.7(c)에 의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함.

이민국은 45 CFR 1060.2의 지역사회 봉사행정 수입빈곤 지침 (빈곤지침)을 기본근거로 경제상 필요성이 등장할 때 신청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함.

빈곤지침을 지침으로 하나, 취업허가신청 수수료의 면제요청을 판정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님.

5 부. 제출 장소

질문 16번의 답이:

(a)(3),(a)(4),(a)(5),(a)(7),(a)(8) 인 경우는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기 바람:

INS Service Center
P.O. Box 87765
Lincoln, NE 68501-7765

질문 16번의 답이:

(a)(6),(a)(11),(a)(13), (c)(2),(c)(3)(i),(c)(3)(ii),(c)(3)(iii),(c)(5),(c)(6), (c)(7),(c)(8),(c)(17)(i),(c)(17)(ii)또는 (c)(17)(iii) 인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에 해당하는 Service Center 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기 바람.

카네티컬, 델레웨어, 디씨, 메인, 메릴랜드, 마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슬베니아, 포토리코,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또는 미국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는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INS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구암, 하와이 또는 네바다의 거주자가 신청서를 우송할 장소는:

INS Service Center
P.O. Box 10765
Laguna Niguel, CA92607-0765

알라바마, 아칸소, 홀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 카로라이나, 오클로호마, 싸우스 카로라이나, 테네시 또는 텍사스의 거주자가 신청서를 우송할 곳은:

INS Service Center
P.O. Box 851041
Mesquite, TX 75185-1041

미국 기타 지역의 거주자는 다음 장소로 보냄:

INS Service Center
P.O. Box 87765
Lincoln, NE 68501-7765

만약 질문 16번의 답이

(a)(10),(a)(12),(c)(1),(c)(4),(c)(11),(c)(12),(c)(14),(c)(16),(c)(18)인 경우는: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해야 함.

LIFE 법에 의한 확인 서를 근거로 EAD를 신청하는 경우

질문 16번의 답이 **(c)(14)** 또는 **(c)(24)**인 경우에 신청서를 우송할 곳: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Post Office Box 7219
Chicago, IL 60680-7219

질문 16번의 답이 **(a)(9)**인 경우에 보낼 곳: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Post Office Box 7218
Chicago, IL 60680-7118

질문 16번의 답이 **(a)(15)**인 경우에 보낼 곳: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Post Office Box 7216
Chicago, IL 60680-7216

주의: 질문 16번의 답이 특별 ABC 신청 지침에 의한 **(a)(8)** 이며 망명과 함께 EAD를 신청하는 경우는, 망명신청을 제출하는 곳에 신청서를 우송하기 바람.

질문 16번에 대한 답이 **(c)(9)**인 경우는 조정신청을 제출한 같은 관할 이민국 사무실이나 Service Center에 신청서를 우송해야 함.

질문 16번에 대한 답이 **(c)(10)**이며 구조신청 자격이 있는 NACARA 203 신청자인 경우, 또는 양식 I-881의 신청이 아직 계류 중 EAD를 갱신 신청하는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해당 이민국 Service Center에 EAD 신청서를 우송해야 함:

알라바마, 아칸소, 콜라라도, 카네티컬, 델라웨어, 디씨,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아나, 메인, 메릴랜드, 마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카로라이나, 오클로호마, 펜실베이니아, 포토리코,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카로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미국 버진 아일랜드, 버먼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또는 와이오밍에 거주하면, 다음 장소로 신청서를 우송함:

USIN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
St. Albans, VT 05479-0001

알래스카, 아리조나, 칼리포니아, 구암,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몬테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 다코다, 오래곤,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 워싱턴, 또는 위스콘신에 거주하면, 신청서를 다음 장소로 우송해야 함:

USIN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Box 10765
Laguna Niguel, CA 92607-0881

EAD 신청 수수료는 별도의 수표나 환수표로 접수 시켜야 함. 양식 I-881의 수수료와 합친 금액의 수표를 쓰지 말아야 함.

질문 16의 답이 (c)(10)이고, 이민국에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NACARA 203 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출국 또는 제거로부터 구제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면, 거주지의 해당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해야 함.

6 부. 처리 안내 정보

접수. 소정의 수수료, 증거, 서명 또는 사진 (필요한 경우) 이 없이 제출된 신청서는 본인에게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반환 됨.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민국에서 접수 할 때까지는 적합한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이민국 Service Center에서 접수되면, 양식 I-797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신청에 대한 결정.

***승인.** 승인이 나면 EAD를 신청자에게 우송 하

*** 증거의 요청.** 추가적인 정보 또는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서면요청서를 신청자에게 우송함.

*** 부결.** 신청의 승인을 할 수 없을 때는 부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통지서를 받게 됨.

무결정.

*** 임시 EAD.** EAD를 적합하게 신청 한후 90일 내에 또는 1995 년 1월 4일 또는 그 이 후 망명 신청 근거로 EAD 신청을 한후 30일 내에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관할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임시 취업허가서를 받을 수 있음. 이때 반드시 신분증 그리고 취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들을 지참하고 가야 함.

7 부. 그 밖의 정보

위증에 대한 벌칙. 이 신청서의 질문에 대한 답들은 모두 위증벌칙 전제 하에 진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선언되는 것임. 미 연방법 28장 1546 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음:

...선서 하에 또는 미국 연방법 28장 1746조에 위증 벌칙이 허용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신청서, 서약서 또는 이민법 또는 규정에 기술 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에 알고도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신청서, 서약서 또는 기타 서류를 알면서 제시하는 자는 이 법률 해당 조항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가지 벌을 다 받게 될 수 있음.

이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알고서 기재하면 미연방법 18 장에 의하여 신청자 그리고/또는 작성자는 처벌 대상이 됨. 또한 이 신청서에 알고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이민 및 귀화법(INA), 8 U.S.C.1324c 274C 조에 의하여 신청자 그리고/또는 작성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U.S.C. 1324c 에 의하여 민간서류 사기행위를 범한자는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청자가 취업허가를 받으려 할 때, 신청자에게 양식 I-765 취업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8 CFR 274A(b)(1)(C)(iii)에 있음. 양식 I-765에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청자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유무를 결정하고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취업허가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됨. 요구된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 또는 부결될 수 있음.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민국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연방, 주, 지방 그리고 외국 법 집행 및 규제기관에 노출될 수 있음.

서류축소법. 어느 정부기관도 정보수집을 실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OMB (관리에산처)의 현재 유효한 통제번호가 없는 정보수집에는 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음. 이민 및 귀화 업무국은 양식과 양식의 작성지침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민법은 대단히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음. 이 양식을 쓰는데 소요되는 일반의 부담은 응신 당 3 시간 25 분으로 계산했음. 여기에는 지침 설명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수집된 자료를 완성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포함하였음. 이민국은 부담 시간측정이나 양식에 대한 어떠한 논평 또는 부담축소를 위한 의견이 있으면,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PDI, 425 I Street, N.W.; Room 4034, Washington, DC 20536; OMB No. 1115-0170으로 보낼 것을 환영함. 이 주소로 작성한 양식은 보내지 말기 바람.